

내부 신고자 보호규칙

2013. 8. 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하 “공제회”라 한다)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방법·절차·신고사항의 조사 및 신고자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회 임직원”이라 함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내부신고센터”라 함은 사내 인트라넷 및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제회 임직원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콘텐츠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내부신고센터, 서면,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공제회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제회 임직원과 일반인을 말한다.
4. “보상금”이라 함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2.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3. 임직원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1호내지 3호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혜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6.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제4조(신고의무 및 방법) ①제3조의 각 호의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팩스·방문 신고하거나 내부 신고센터를 통하여 이를 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내부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신고내용이 내부신고로서 합당하고 사실로서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신고기한)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내부신고 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위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부터 7일 이내에 한다.

제6조(내부신고센터) ①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내 인트라넷에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센터를 개설·운용한다.

②내부신고센터는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공개여부, 회신여부 등으로 구성한다.

③ 내부신고센터의 운영과 관리는 감사부서 소관으로 한다.

제7조(신고의 처리) ①감사부서는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등

②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 내부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피신고자의 신분과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비밀보장 및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비실명 또는 차명으로 접수된 신고 사항은 조사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처리 한다.

제8조(조사결과의 처리)①감사부서는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고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부서는 7일 이내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통보는 신고자가 원할 경우 면담을 통하여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전담책임관의 지정)①감사부서는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사안별로 전담책임관을 지정한다.

②전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부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 조사 및 결과처리
2. 서면 등으로 접수된 신고사항 조사 및 결과처리
3.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③전담책임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신고사항의 처리에 앞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①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책임관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고자 등의 신분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련 정보
 3.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기관
 4. 신고자 등과 혐의대상자 및 혐의대상기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 ②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10조 제1·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규정 제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1단계 위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⑤내부신고자의 신분 또는 신고내용을 알아내고자 한 임직원에 대하여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신고자 보호) ①임직원은 이 지침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인사·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임직원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에서는 경위를 파악하여야 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면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보복행위 금지)①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신고하여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 ②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조자의 보호) 이 지침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책임의 감경) ①임직원은 이 지침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사규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허위신고 등) ①신고자가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 및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①내부신고로 인하여 공제회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②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보상심의) ①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결과를 최종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부신고자보상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보상심의를 위하여 감사부서에 「내부신고자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고 감사 1명을 둔다.

1. 위원장 : 감사

2. 위 원 : 감사부서장, 타부서 3급이상 직원 2명 및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선임한다.

3. 간 사 : 감사부서 내부신고 담당직원 1명

④제3항제2호의 외부위원은 과장급이상 공무원, 기타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⑤보상심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상심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신고 전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요원 및 윤리업무 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8.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보상금의 환수) 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보상금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자 포상) 내부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단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6조 관련)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1. 보상기준

- 가.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시 : 수수금액의 2배이내 지급. 다만, 조사·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 수수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나.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자진 신고시 : 수수금액의 3배이내 지급. 다만, 행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자진 신고시에 한하며,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
- 다. 신고로 인한 공단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 발생시의 금액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7%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5%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 20억원 초과금액의 3%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 40억원 초과금액의 2%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말일까지 발생하는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상금 지급한도 및 중복시의 보상기준 등

- 가. 보상금 지급한도액 : 최대 5억원
- 나. 위 1호 가 목 내지 다 목의 보상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 금액으로 지급
- 다.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액을 연명자 수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 경우 산정금액의 천원 단위이하는 절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패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공개여부	☐ 공개 ☒ 비공개	조사결과 회신여부	☐ 원함 ☒ 원하지않음
신고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 내용				
증거 서류				
비고				

내부신고자보호지침 준수서약서

☐ 신고사항 :

☐ 조사기간 :

본 감사인은 상기 내부신고의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신고자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조사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급 ○○○ (서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감 사 귀하